

소 장

원 고 권 인 속

인천소년교도소 제감 ([REDACTED])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고 영 구, 김 상 철, 박 원 순,
이 돈 명, 이 상 수, 조 영 례,
조 준 희, 홍 성 우, 황 인 철,

송달장소 :

변호사 고 영 구

피 고 대 한 민 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성 기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1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위자료 청구권의 성립

(1) 소외 분귀동은 경장으로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자, 같은 한의정, 같은 황병선은 순경으로 같은 과 형사계에

근무하는 자, 같은 옥봉환은 총경으로 부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자, 같은 박성용은 경위로서 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근무

하던 자, 같은 이흥기는 순경으로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각 근무하는 자들이고,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필살로 형언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하여

(2) 소외 옥봉환, 같은 박성용, 같은 문귀동은,

1986. 5. 3.의 이른 바 인천사태 이후 인천노동운동연합위원장 양승조 등 인천사태수배자들의 체포에 현상금과 1계급특진 등의 특전이 걸려 있어 그 체포를 위하여 다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 때마침 원고가 서울대학교 가정대 의류학과 4학년을 중퇴하고 공장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변조·사용한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기회로 위 원고에게 여성으로서의 성적수치심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하여 인천사태수배자들의 체포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어내려는 목적에서 상호공모하여,

가. 1986. 6. 6. 04 : 00경 소외 옥봉환이 원고를 부천경찰서 상황실로 데려오게 하여 원고에게 동인이 양승조 등 인천사태수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권양, 너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군" 하고 말하며 화를 내고 나가 고, 뒤따라 소외 박성용이 원고에게 "권양이 너무 밥을 안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온 사람들 (인천사태 수배자들)과 한 팀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피의 사실 담당조사관도 아닌 (담당조사관은 경사 정도였었다) 소외 문귀동을 향하여 "문귀동, 자네가 말아서 해보게." 라고 지시하자, 위 문귀동은 그 무렵부터 동일 06 : 30경까지 피해자를 1층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가서 인천사태수배자등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데라고 추궁하면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 안되겠군, 나는 5.3 사태 때 여자만 다뤘다. 그때 들어온 년들도 모두 아랫도리를 밧가벗겨서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다 불더라, 네 몸에 봉이 들어가면 안 불겠느냐?" 고 폭언.협박하면서 겁에 질려 벌벌떨고 있는 동녀의 자켓과 남방셔츠를 강제로 벗게한 후 소외이흥기를 불러 입회시킨 가운데서 동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직접 끌어내리면서 "너 처녀냐? 자위행위 해본 적이 있느냐?" 고 묻고 브레지어를 들추어 밀어올리면서 "젖가슴 생김으로 보니 처녀가슴

같지가 않다 " 고 말하고 계속 추궁 하여도 여전히 불응한다는
 이유로 젓가슴을 3 - 4회 주무르면서 위 이흥 기에게 "고추
 가루물 가져와 " 라고 말하여 마치 고추 가루물로 고문을 할
 것 처럼 협박하는 일방 동 너에게 책상위로 올라가라고 하
 면서 "기어이 자궁 에 붓을 집어넣어야 말하겠느냐?" 라고
 협박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6. 7. 09:00경 부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박성용,
 문귀동과 경사 정오도 등 10여명의 형사가 원고를 둘러싼
 가운데서 원고가 그 전날인 6. 6. 위 가항의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하여 억지로 원고의 교우관계 등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이유로
 경사 정오도가 원고의 뺨을 주먹으로 한번 구타하고 위 박성용
 은 원고에게 "앞으로는 이제까지 때우한 것과는 달라질거다,
 오늘 저녁에 두고 봐라 " 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위 문귀동

에게 저녁 때 "그런방법으로 "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위
 문귀동은 토요일 밤중인 같은날 21 : 00 - 23 : 00 경
 사이에 불이 꺼져 있는 부천경찰서 수사과로 원고를 끌고
 들어가, 먼저 위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원고에게
 "독한년 !" 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제까지 네가 말한 사실
 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됐다. 남들은 다 퇴근했는데
 네년 때문에 토요일 저녁 쉬지도못하고 한밤중에 또 조사
 를 해야 된다. 위에서 그년 되게 악질이니 족치라고 했다.
 너의 자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야 " 라는 등 폭언을 하고
 강제로 자켓과남방 셔츠를 벗게 한 후 위 한희정과 같은
 황병선을 불러 동녀의 양손을 등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다리 안쪽에 나무봉을 끼워 꿰어 앉힌 후 동녀의 넓적다리
 와 허리부위를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 오를 정도로
 계속 짓밟고 때리게 하고 동녀가 비명을 지르자 "이 년이
 어디서 소리를 꺽꺽 지르느냐,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년 하나 죽이는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욕박
 지르고, 다시 원고를 뒷수갑을 채운 채 역시 전기불이 꺼져
 있는 제 2호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문을 안으로 닫고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하면서 동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상의를 올린 후 젖가슴을 주무르다가 팬티속
 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동녀가 비명을 지르자 소리
 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욕박지르고, 동녀의 바지와 팬티
 를 무릎 밑으로 벗겨내린 후 의자 두 개를 서로 마주보도록
 놓고 동녀를 한쪽 의자위에 수갑찬 손을 의자 뒤로 돌린 상태
 에서 앉게 하고 문귀동 자신은 맞은편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그 위에 앉아 동녀의 몸과 밀착된 자세를 취한 다음 계속 수배
 자의 소재를 볼도록 강요하면서 수시로 동녀의 젖가슴을 주무
 르고 국부를 만지고 동녀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대고, 그
 후 동녀를 일으켜 세워 바지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브래지어를
 밀어 올려 젖가슴을 알몸으로 드러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뒷

수갑을 한 채로 앞에 놓인 책상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도
 아래도리를 벗고 뒤쪽에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동녀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고, 이때 동녀가 공포와 경악과 굴욕감
 으로 인하여 거의 실신 상태에 들어가자 동녀를 다시 의자위
 에 앉히고 담배에 불을 붙여 강제로 뱃모금을 빨게 하고,
 잠시 후 동녀를 의자 밑으로 난폭하게 끌어들여 바닥에 무릎
 을 꿇게하고 앉힌 후 문귀동 자신은 의자에 앉아 동녀가 자신
 의 성기를 정면으로 보도록 하는 자세로 조사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동녀의 얼굴을 앞으로 잡아당겨 입이 자신의 성기에
 닿도록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동녀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동녀가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까 난폭하게 동녀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강제로 몇차례 키스를 시도하고 다시 입을 동녀의
 왼쪽 젖가슴으로 가져가 유두를 세차게 빨기를 두어차례에 걸쳐
 하고, 그 후 다시 동녀를 책상위에 먼저번과 같은 자세로 엎드
 러지게 해 놓고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동녀의 국부에 몇차례

갔다 대었다 떼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과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2) 소외 한희정, 소외 황병선은,

1986. 6. 7. 21 : 00 - 23 : 00 경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 1호 조사실에서 위 문귀동이 원고를 조사할 때 위

1항 나호 기재와 같이 동녀의 양손을 등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다리 안쪽에 나무봉을 끼워 꿰어 얹힌 후 동녀의 넓적다리 및

허리를 멍이 시퍼렇게 들고 툭툭 부어오를 정도로 여러차례 마구

짓밟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3) 소외 이흥기는,

1986. 6. 6. 04 : 00 - 06 : 30 경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

계 제 5호 조사실에서 위 문귀동이 원고를 조사할 때 위 1항의 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옆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위 문귀동이 고추 가루 탄 물을 가져오라고 하자 이에 호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외분리동의 가혹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했던
것입니다.

2. 위자료 액수.

이상의 원고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가혹행위는 그것이 단순히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원고의 육체에 상처를 남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영혼과 인격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적인 성격들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는 생명의 상징인
인간의 성을 고문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현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는 근대 자유 시민국 가
의 태동에서 부터 확고히 인류 사회의 진보적 징표로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 전문을 비롯한 제반 자유권적 기본
권 조항에서 명백히 보호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한 생명, 신체의 가장 신비하고 존귀한 부분인 성을 위
소외인들은 악마와 같이 유린하고 모독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둘째로,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는 변태성욕에
사로잡힌 한 개인에 의하여 우발적인 충동으로 저질
러진 범행이 아니고 경찰권력 조직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계획
되고 수행된 조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실수,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려집수가 없고
위 소외인들이 소속되고 있는 경찰조직, 그 조직을 포용하고
있는 피고 국가의 존립근거를 온 국민으로 하여금 되물게 하는
중대한 도덕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는 그 잔인성과
참혹함에 있어서 인간적 양심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참마  끝까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처녀로서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야수와 같은 한 악마와

에서 수 갑을 체인 체 민몸으로 시는 것 조 각 치욕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유방과 국부를 만지우고 은 갓 음란스런 욕설을
 들 었던 원고 의 심정은 죽음보 다도 더욱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원고 가 위 고분 행위 직후 에 자살의 유혹을 받았음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어떤 언어로서도 그 잔인, 참담함을 설명하기
 어려운 위 소외인들의 가혹 행위로 인하여 원고 의 육 체와 영혼
 은 산산조 각이 나도록 파괴되었고 그 엄청난 상처와 충격의
 회복 이란 어떠한 방법 에 의하여도 실제로 불 가능할 일이지만
 인류 적 양심과 민족 적 운명이 피고 나라의 원고 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 인정으로써 그나마도 위무, 순 치될 수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 나라의 건강성과 도덕성을 되찾는 데 일조 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 나라는 원고 에 대하여 그 도의적 책임의
 상징으로써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나, 그

약수 에 관하여는 천금을 준 다 하여도 원고의 개인적 육 체와
영혼 의 파괴, 온 민족의 양심의 손상을 어찌 보상할 수 있으
리오만은 피고 나라의 도의적 책임의 상징으로써 다만 금
5,000,100원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변론 시 추후 제출 하겠읍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 장
2. 납 부 서
3. 소장 부분

1986. 9. .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고 영 구

변호사 김 상 철

변호사 박 원 순

변호사 이 돈 명

변호사 이 상 수

변호사 조 영 태

변호사 조 준 희

변호사 홍 성 우

변호사 황 인 철